

간접고용 · 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

정해명 /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공인노무사

1. 사고발생에 따른 처벌대상 및 기준

가. 사고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A. 사업주 및 수급사업주의 처벌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 ① 사업주는 기계, 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 추락, 붕괴,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및 굴착, 추락, 낙화, 붕괴, 비례 등의 장소에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② 안전상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이 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 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2002.12.30 신설)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

1) 노동부령인 기존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 7.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되었다.

다

(3) 처벌대상 및 처벌기준

① 사업주개념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 따라서 사내 협력회사 또는 건설 하도급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안전상조치미비로 처벌대상자는 협력회사 또는 하도급회사(법인)가 되며, 협력회사(법인)으로부터 공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이 있는 경우²⁾에는 그 현장소장과 법인,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제71조(양벌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됨.

-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안기 68301-1224. '93.12.15)

② 처벌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 위반시 행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법인의 경우는 법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에 근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으며, 제71조에 의하여 동조의 벌금형이 부과됨

B. 도급인의 안전상조치 의무

(1)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주 관련 판례 (대법원2007.3.29. 선고2006도8874판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평소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의뢰를 받더라도 작업을 거절해 오던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의로 의뢰받은 다음,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용접작업을 실시하리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법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국 법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 위반죄는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생략)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2) 도급인이 안전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5항)

- ①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②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⑤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⑥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⑦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⑧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 ⑨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 ⑩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⑪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⑫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 ⑬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 ⑭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⑮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산안법 29조 사업주 관련 대법원 판결사례**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030 판결)

-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3]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편리성에 치중한 나머지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한 사안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벌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및 3항의 위반시 도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항을 위반하여 안전상 조치를 해태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제71조에 의하여 동조의 벌금형이 부과됨

C. 재해발생시 처벌 및 처분대상

①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8조)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서 제출한 최초 요양신청서 및 요양비청구서, 유족급여 청구서를 월1회이상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이중

- 중대재해(사망, 또는 초진 3개월이상 부상 동시 2명이상)
-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³⁾
-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에 대하여 조사하여 법위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받게 됨

② 구속수사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7조)

-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을에도 사업주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거나 작업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미조치로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 법제48조 제4항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의 변경명령에 따른 조치불이행으로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③ 작업중지 명령(산안법 제51조 제7항)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협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작업중지명령서) 할수 있다.

④ 영업정지의 요청(산안법 제51조의 2)

- 산안법 제23조(안전상조치) 및 산안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시(72시간이내)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초진 전치3월이상 부상자 2명은 사망자1명으로 간주)
- 법 제51조 제6항(사용중지) 법 51조 제7항(사용중지)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노동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6호⁴⁾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시행규칙 제136조)

나. 사고발생에 따른 형벌상 처벌

(1)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됨.

(2) 안전관리자의 경우 형법 제258조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안전관리자의 “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산안법 제20조 제1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의미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는 안전교육 업무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의 적격품 여부 확인등의 업무등의 업무와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업무중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하는 것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임을 산업안전법 제15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3) 관리감독자의 형법 제269조 위반여부

- ① 통상 현장의 작업시지관계를 보면 원청 현장소장 ⇒ 공사과장 ⇒ 공사담당대리(기사) ⇒ 하청현장소장 ⇒ 팀장(시공참여자)로 작업지시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② 현장에서 소속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과장, 반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①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④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⑤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⑥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

4) 영업정지요구가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이하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시 PQ 신인도점수 2점 범위 내에서 감점됨.

- ③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재해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관리감독자이외에 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장비운전사, 동료근로자라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자가 될 수 있음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판례(대법원 2010. 11. 11. 2009도13252)

철근지지대의 설치 개수나 설치순서 등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공사의 관리·감독업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과 규칙 제8조의2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 실시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서로 다름을 전제로 현장소장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현장소장과 캔소시엄 주관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 실치사죄가 성립한다.

2. 각 사안별 사고에 대한 처벌결과

* [참고자료 참조]

3. 이마트 사망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및 처벌결과

가. 이마트 사망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1)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사업(산안법 제29조)

건설업,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제외),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2) 사고가 발생한 이마트는 업종이 산안법 제29조의 적용대상사업이 아닌 유통서비스 또는 도소매업에 해당되며, 피해자들 역시 이마트의 직접고용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안법 23조의 안전상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음.

*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수행하던 작업은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지하 공조실에서 냉매가

스 교체작업이었으므로 이마트가 제29조의 적용대상사업이었다면 이마트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었음

- (3) 이마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안전보건책임자 등이 지하 공조실에서 냉매가스교체작업을 진행함을 알면서도 환기장치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설사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검찰은 이마트를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4) 사고 이후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⁵⁾하여 이마트 탄현점 지점장과 이마트 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였음.

나. 하청사업주인 (주)트레인코리아에 대한 처벌

- (1) 피해자들의 사업주인 트레인코리아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혐의로 수사를 담당한 노동부 고양지청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들음.
- (2) 관련 기관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건으로 수사결과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이 옴

다. 이마트 사망사건에 관한 시사점

- (1) 산업구조가 기존의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비스업 등에서도 원하청 및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산안법에서는 3차 산업에서의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대상 사업이 제한되어 있음.
- (2) 이마트 매장의 냉매교체작업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회사에서 작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도급인에게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을 경우 산재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작업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지우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임

4.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

5) 담당 근로감독관과의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환기설비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하나 정확하지 않음

가. 산안법 제66조의 2의 신설

산안법 제66조의 2부터는 각종 산안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2006년 개정되어 산안법 제66조의 2가 신설되기 전에는 산안법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규범을 위반한 경우였음.

이에따라 사망이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사망에 관하여 산안법상의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을 통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였음.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경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입증을 피의자가 아닌 검사가 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음

그런데 산안법을 2006년에 개정하면서 제66조의 2를 신설하였음. 산안법상의 안전상 조치 및 보건상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를 통해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게 되었는데 적어도 산안법 66조의 2에서 정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산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야하는 수사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음.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비교하여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취지상으로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였음

나. 현실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한 산안법 적용

그러나 현실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관대하기 이를테 없음

2009년 국정감사 당시 노동부 통계⁶⁾를 보면

	2007년	2008년 ⁷⁾	2009년 (8월까지)	구속사건
안전보건 지도감독 사업장	50,713	33,872	17,260	3년간 총 5건
위반 사업장	45,299 (89%)	32,391 (93%)	16,000 (93%)	

6) 이화수 의원,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수 및 처벌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자료없음으로 통지받았으며, 재 공개청구를 한 상태임

행정처분	95% (시정 및 경고 82%, 과태료처분 3.7%)	
사법처리	5%	

또한 2009년 대법원의 2008도7030 판결⁸⁾ 이후 원수급인(원청)이 공사를 발주받아 원청은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현장에 배치하고, 해당 공종별로 전부 하청을 주었을 경우 산안법 29조가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인 대형 건설회사들은 산안법 위반⁹⁾을 피해갈 수 있고, 이와 아울러 PQ점수¹⁰⁾ 하락도 막을 수 있음.

위의 사안별 처리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원하청 구조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보면 대부분 300만원 이하의 벌금¹¹⁾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무죄로 확정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산안법을 2006년에 개정하여 제66조의 2를 신설하면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들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여전히 현실에서는 사람 목숨 1명당 벌금 기백만원이라는 공식이 깨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마지막으로 2010년~2011년 산안법 23, 29조 위반으로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하급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함.

사건번호	피해규모	판결결과	비고
광주지법 나주지원 2011고정248	건설현장 1명 사망	하청 대표자 벌금150만 원청 건축부장 벌금250만	
창원지법2011노756	건설현장 1명사망	하청 현장소장 벌금300만 하청회사 벌금300만	원청 현대건설

- 7) 이명박 정부들어 ‘기업하기좋은 나라’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기업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8) 산안법 29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9) 사건에 따라 원청 현장소장이 형법 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좌를 받을 수도 있다.
- 10)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례를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피의자가 건설회사임을 알 수 있다. 산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끝나는데 반해, 건설회사들이 정식 재판청구 및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PQ점수 때문으로 추정된다.
- 11) 집회에 나가 협행법으로 연행됐을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 수백만원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산안법위반이 얼마나 물방망이 처벌인지 알 수 있다.

		원청 현장소장 무죄 원청회사 무죄	
울산지법2011고단257 1	건설현장 1명사망	하청 사업주 벌금300만 원청 사업주 벌금300만	
인천지법2011고단220 2	건설현장 1명사망	하청사업주, 원청 현장소장, 원청회사 각 벌금 1000만	업무상 과실치사 포함
인천지법2011고정578	철거현장 1명사망	하청 현장소장, 하청회사, 원청 현장소장 각 벌금 300만	업무상 과실치사 포함
수원지법 2011노4417	중대재해	하청 사업주 벌금500만 하청회사 벌금700만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1고단391	3명사망, 1명부상	원청자대표 - 벌금700만-산안 23조, 29조 원청(삼호조선) - 벌금500만 -산안 29조 원청 공무부장 - 벌금300만 원청 안전관리팀장 - 벌금300만 하청 대표 - 벌금700만 하청(효천산전) - 벌금500만	2010. 11. 19. 삼호조선 지하전력구 폭발